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

의 안 번 호 **473**

제출연월일 : 2009. 4. 27.

제 출 자: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,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절 차 : 기관·단체 추천 ⇒ 공적심의 ⇒ 의회동의 ⇒ 수여

나. 수여시기 : 수시

다. 수여자 예우

- ▶ 명예시민패 수여, 수여사진 증정 등 자긍심 고취
- ▶신문, 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공적 홍보
- ▶월간「It's Daejeon」책자 제공

라. 금회 수여대상자(1)

▶이 성 운

3.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

관계법령

○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

제2조(명예시민증 수여)①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 "명예시 민증"이라 한다)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회기중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대전광역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○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사무 처리규정

제2조(수여대상범위) ①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(이하 "명예시민증" 이라 한다)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자
- 2.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, 해외교포, 타 시·도 출신인사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- 3. 대전광역시의 문화·예술·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
- 4. 과학・기술・경제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
- 5.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
- 6.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4조(선정절차) ②「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」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하고, 사후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